

최근 구제역 파동이 재발하면서 양돈농가의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구제역 및 콜레라 발생으로 인한 피해농가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개 해당 행정기관의 홍보와 정책자금 취급기관의 안내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기회에 양돈농가가 이용할 수 있는 정책자금의 종류와 그 신청방법에 대하여 지면을 통하여 정리하여 보고자 한다.

확충, 사육기반 확충 및 생산유통 개선을 위한 구조개선사업과 농촌 개발사업 등을 통한 중농이상의 농가 육성, 농업기반 시설의 현대화 및 농업관련산업의 육성 등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90년대에 걸쳐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농특세, 축산발전기금 등을 재원으로 한 농업생산기반 확충 및 구조개선사업이 마무리되어 가면서 농업부문의 정책자금의 운용 방향은 실제 영농에 소요되는 농업경영비 등 농업생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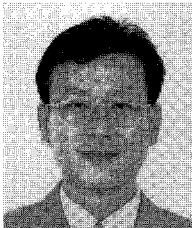
양돈농가가 이용할 수 있는 정책자금의 종류와 신청방법

1. 농업정책자금 운용 방향

1986년 우루과이라운드를 시작으로 정부는 그동안 정책적으로 소외되었던 농업분야에 대하여 여러 가지 대책을 제시하였으며, 80년대 후반과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농업부문 구조개선을 위한 대규모 정책자금을 투입하였다.

당시 농업부문의 정책자금 투입의 방향은 농업부문의 생산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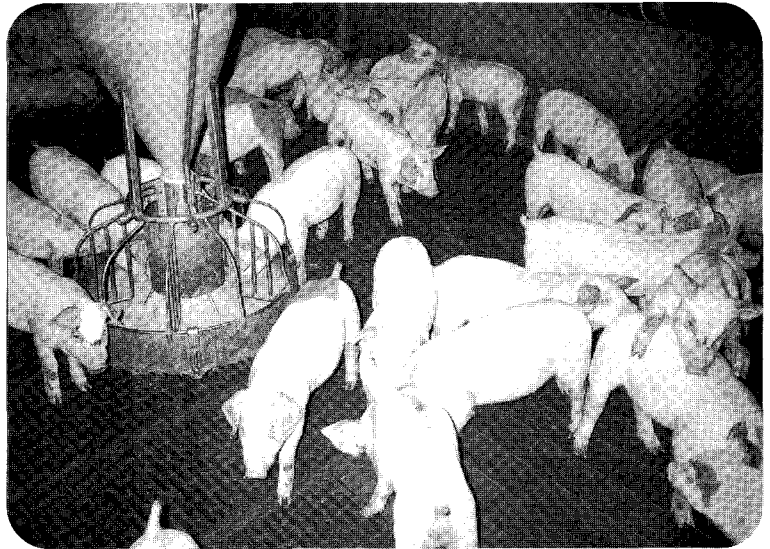
필요한 운영자금 지원, 금융비용 부담이 큰 농업경영체에 대한 부채대책성 자금 지원, 재해발생으로 인한 피해농가에 대한 재해복구비 지원 그리고 농업인이 필요시 적기에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동시에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정책자금 상시 지원체계를 갖춘 농업종합자금 지원 등으로 운용되어지고 있다.



조 병 은 차장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

2.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된 최근 동향

위에서 설명한 정책자금의 운영 방향이 신규시설 설치 또는 기반확충 등 하드웨어적인 장치시설 투자가 마무리되고, 경영비 지원 및 농가가 보유한 금융부채에 대한 효율적인 대체를 위한 자금지원 등 소프트웨어적인 부문으로 자금지원 방향이 전환되면서 정책자금 관련 정부의 시책도 일부 바뀌어지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 축산경영자금은 농가당 대출잔액기준 1,000만원 이내에서 사육규모에 따라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가. 정책자금 신용대출한도 축소

과거 농협, 축협, 인삼협이 각각 적용하던 신용대출한도가 2002년 7월 1일부터 통합하여 농·축·인삼협 및 농협중앙회에 있는 정책자금 대출잔액을 합산하여 3,000만원 이내로 적용토록 개정되어 향후 농업인이 정책자금에 대하여 신용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상당히 축소될 것으로 예상

나. 정책자금 연대보증인의 보증한도 신설

정책자금대출시 연대보증인의 보증한도를 3,000만원 이내로 제한하여 연대보증인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막고자 하는 조치로 2002년 7월 1일자로 시행

다. 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예정

현재 정부에서 검토중에 있으며 조만간 시행할 예정

3. 양돈농가가 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의 종류와 그 신청방법

양돈농가가 필요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자금의 종류와 그 신청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농업종합자금

1) 대상 :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법 제2조에서 정하는 짐승, 가금, 유기축산업 등의 기반조성, 사육시설 및 장비 등

가) 기반시설 : 진입로, 목로, 용수, 전기시설 등

나) 사육시설 : 축사, 창고, 관리사, 조사료 생산장비, 사료분쇄기, 원유분석장비, 축산분뇨처리장비(축산분뇨처리 시설지원사업에서 지원되는 기계 장비는 제외) 등

2) 용도

가) 시설자금 : 생산 양돈시설의 설치(증축 포함)에 소요되는 자금

나) 운영자금 : 사업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가축입식비는 제외)

다) 개보수자금 : 기존시설의 개수 보완 또는 기계 장비구입에 소요되는 자금 등

가 및 영농수익성 추정, 소요자금 산정, 신용 담보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대출대상자 및 금액을 결정하여 자금을 지원

나. 축산경영자금

3) 지원금액 : 소요금액의 100% 이내

구 분	5백만원 이내	1천만원 이내
한(육)우	10두(필) 미만	10두(필) 이상
젖소	20두 미만	20두 이상
돼지	100두 미만	100두 이상
닭	7,000수 미만	7,000수 이상
기타축종	상기 축종의 사육두수를 참고로 사육규모를 감안하여 결정	

1) 의의

부업규모의 축산농가 및 법인 단체에 대하여 양돈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고 있으며, 비교적 규모가 큰 양돈농가에 대하여는 농업종합자금을, 비교적 규모가 적은 농가에 대하여는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

2) 용도 : 운영자금

4) 지원조건

가) 대출금리 : 5.0%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변동가능)

나) 대출기간 : 시설자금은 5년 거치 10년 상환, 개보수자금은 2년 거치 3년 상환, 운영자금은 2년 이내 일시상환

3) 지원금액 : 농가당 대출잔액 기준 1,000만원 이내에서 사육규모에 따라 지원금액을 결정

4) 지원조건 : 1년 일시상환 (1년 연장가능)

5) 신청방법

가) 대출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및 농업종합자금 취급사무소로 지정된 농·축협

나) 대출신청 : 연중 수시로 자금 필요시 신청가능하며, 각 대출취급사무소에 비취된 안내장 또는 직원을 통하여 사업계획 수립 관련 상담 및 컨설팅 이용 등에 대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 서식 및 대출신청서 구비서류 등을 안내 받아 신청

다)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심사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하고, 대출제한 여부, 경영능력, 재무구조 등에 대한 평

5) 신청방법

가) 대출취급기관 : 전국 지역축협 및 품목축협

나) 대출신청 : 대체로 3월 초에 지역축협 단위로 자금이 배정되고, 그 배정한도내에서 축산계 또는 영농회 단위로 신청자 및 신청금액을 접수

다)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심사 : 영농회 또는 축산계에서 신청·접수한 자료를 토대로 용자협의회(축협단위 심의기구)를 개최하고, 신청자별 대출금액 및 대출대상자를 결정

6) 대출제한사항

농업종합자금 운전자금을 대출받은 농가는



▲시장 군수가 자연재해 및 기타 사고로 판정한 축산농가 및 법인도 재해대책자금을 받을 수 있다.

농축산경영자금 대출 불가

다. 재해대책자금

농·축산농가가 재해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복구비 중 일부를 신규대출 또는 기존대출금에 대한 기한연장 및 이자감면 등을 통하여 피해농가의 조기 피해복구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자금

1) 지원대상자

가) 법령에 의한 재해 : 농림부장관이 농어업재해대책법령 및 자연재해대책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로 판정한 축산농가 및 법인

나)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 시장군수가 자연재해 및 기타사고(화재, 붕괴, 정전, 도난, 폐사 등)로 판정한 축산농가 및 법인

2) 지원금액

가) 재해신규자금 : 피해두수에 대한 연간 경영비의 50% 이내에서 농가당 1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내(법인의 경우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1년 이내(1년 연장가능)

나) 재해로 인한 상환연장 및 이자감면 : 피해농가가 보유한 정책자금 잔액한도 100% 이내

- 상환연장 및 이자감면 기간 : 1년 내지 2년

3) 신청방법

가) 재해신규자금 : 피해농가가 시장·군수에게 자금지원을 요청하고, 시장·군수는 축협과 공동으로 피해조사를 실시한 후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농협중앙회에 신청

나) 기한연기 및 이자감면 : 피해농가가 읍·면·동사무소에 피해 발생 신고를 하고, 읍·면·동사무소는 현지확인 및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행정기관을 통하여 농림부에 보고하고, 중앙회재해대책본부 또는 농업재해대책심위원회의 결정결과에 따라 피해농가의 기존대출금의 기한 연장 및 이자감면 조치를 실시

라. 축산후계자 육성자금

1) 지원대상자 : 시장·군수 등이 농·어민 후계자 육성대상자로 선발·확정한 농업인

2) 대출금리 : 5.0%(취농창업후계농업인 : 4.5%)

3) 대출기간 : 15년(5년 거치 10년상환)

4) 대출금액 : 1인당 20백만원~50백만원까

지 차등 지원(취농창업후계농업인은 20백만원 ~80백만원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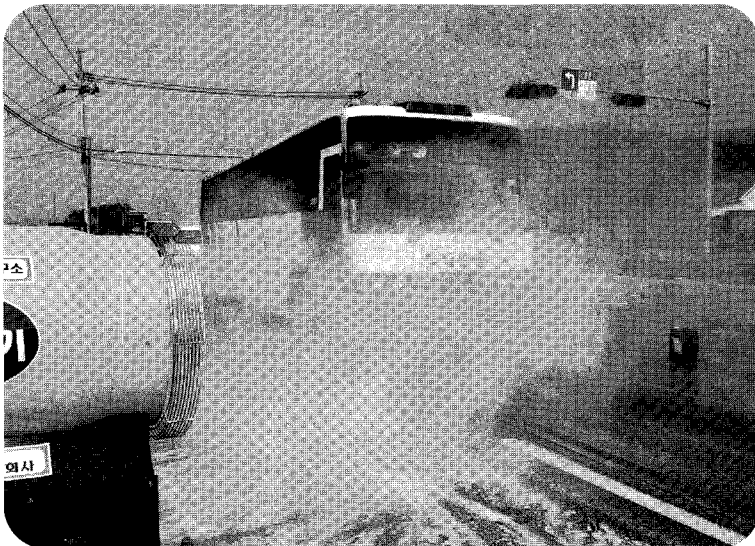
5) 신청방법

가)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정 농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신규후계농업인 또는 취농창업후계농업인에 대하여는 농업기술센터의 심의·추천을 받아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가 대상자 선정 및 지원액을 결정

연장 및 이자감면 조치가 현재 시행되고 있으므로 해당 피해농가는 시·군 또는 농·축협을 통하여 신속히 안내받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대출금

농축산경영자금(농기업경영자금 포함), 농어촌구조개선자금, 축산발전기금 및 부채대책자금



▲최근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살처분 농가에 대한 조치로 기존 정책자금 대출금에 대하여 상환 연장 및 이자감면 조치가 현재 시행되고 있다.

나. 대상금액

살처분일로부터 2002년도 말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원금에 대하여 상환도래일로부터 2년간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이상으로 양돈농가가 이용할 수 있는 정책자금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는 바, 좀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의 농·축협 대출사무소를 통하여 문의하시면 더욱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 농·축협

시장·군수가 발급한 사업추진 계획(확인)서에 의하여 해당년도 지원자금을 대출

다. 양돈

4.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살처분 농가에 대한 조치

최근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한 가축살처분 농가에 기존 정책자금 대출금에 대하여 상환

